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주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9009

발의연월일 : 2025. 05. 18.

발 의 자 : 주호영・김상훈・강대식
이인선・조인철・양부남
권영진・김승수・정준호
김기웅・안도걸・정진욱
최은석・유영하・윤재옥
우재준・최혁진・백혜련
조지연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은 ‘기부 대 양여’ 방식(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, 종전부지를 국가로부터 양여받아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)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 군 공항 이전을 ‘기부 대 양여’로 진행할 경우, 천문학적인 사업비용과 장기 사업 기간에 따른 막대한 금융이자 비용 등으로 인해 10조가 넘는 비용을 투입하고도 10년이 넘어야 회수가 가능한 상황임.

실제로 대구시에서는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민간 특수목적법인(SPC) 구성을 추진하였으나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 무산되었고, 이에 금융 이자 비용 절감을 위해 대구시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자

기금을 활용한 공공개발을 추진했지만, 이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임.

광주, 수원 등 다른 군 공항 이전에 있어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, 특히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기에, 결국 국가 핵심 안보시설인 군 공항 이전사업 전체가 중단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.

또한, 그동안 광주·대구·수원 등 3개 군 공항 주변 지역의 극심한 소음피해로 인해 백만 건이 넘는 소송이 제기되었으며, 청구액만 총 1조 2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소음 문제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. 이러한 이유로 이전 지역의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 대책 역시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음.

이에 군 공항 이전사업의 방식을 '기부 대 양여' 방식에서 국가사업으로 변경하여,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함. 아울러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에서의 비행훈련계획 수립 등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이전 주변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조, 제19조의2, 제23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900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

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① 이전사업은 국방부장관이 시행한다. 이 경우 국방부장관 외의 자가 이전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제5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소음방지대책의 마련 의무) 국방부장관은 이전주변지역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하기 위한 비행훈련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종전부지의 양여) 국방부장관이 「국유재산법」에 따라 종전부지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종전부지를 인계받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은 인계받은 종전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

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전부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완료한 사업 절차는 이 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완료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이전사업의 방식 등) ① 이전사업은 「국유재산법」 제13조(기부채납), 제55조(양여) 및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기부 및 양여의 특례)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,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.	제9조(이전사업의 방식 등) ① 이전사업은 국방부장관이 시행한다. 이 경우 국방부장관 외의 자가 이전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② 사업시행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	②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	<삭 제>

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다. 1.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2. 이전부지의 군 공항시설 설치계획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19조의2(소음방지 등의 대책마련 의무) 국방부장관은 이전주변지역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행훈련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<신 설>	제23조의2(종전부지의 양여) 국방부장관이 「국유재산법」에 따라 종전부지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종전부지를 인계받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은 인계받은 종전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전부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다.